



교육의 첫 자인 '교'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도형의 'ㄱ'자 형태는 교육시설을 보호하고 받쳐주는 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공공의 역할과 재난예방 및 복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www.edulab.or.kr

연구실 안전공제 약관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Education Facility Disaster Association
<http://www.edufa.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TEL : 02) 781-0100(대표), 02) 781-0132(직통)
FAX : 02) 736-6098



교육시설재난공제회
Education Facility Disaster Association
<http://www.edufa.or.kr>

CONTENTS

제1장 연구실 안전공제 상품개요	2
제2장 연구실 안전공제 약관	3
제3장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7
제4장 연구활동 급수표	18
제5장 보상절차 및 서류.....	20

제1 장 연구실 안전공제 상품개요

제2 장 연구실 안전공제 약관

구 분	상 품 내 용
기본방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 ○ 대학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적용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한 연구실 – 대학(원)·산업대·전문대·기술대·대학원대학 실험·실습실 등 – 국·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 등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입주체	○ 연구주체의 장(총·학장)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
보상내용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금액	○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1인당 장애급별 정액(1급 1억원~14급 625만원) 이상 보상 ○ 부상의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1인당 상해등급별 정액 및 실손보상 –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상해급별 최저한도(1급 450만원~14급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급별 최저한도 보상,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상해부위의 부상정도가 경미하여 실제의료비가 상해등급별 최저 보상금액의 90% 미만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공제계약에서 공제계약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주체의 장” 이어야 합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피공제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3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2. “연구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합니다.
 가.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나. 연구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3.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공제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로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로(일정기간 단위의 나누어내는 공제로)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제회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공제회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공제회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공제회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로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공제회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5조(공제회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기간 내에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요양급여)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상해부위의 부상정도가 경미하여 실제의료비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상해등급별 최저 보상금액의 90% 미만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90%이상인 경우에는 상해등급별 최저 보상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 ③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할 다수의 보험 및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계약이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추후 정산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다른 보험 및 공제계약과 추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공제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9조(후유장해급여)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 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급여를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금여에서 후유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사망금여)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1억원 이상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금여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급여의 지급한도) ① 공제회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또는 후유장해급여는 공제기간을 통하여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공제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

② 공제회가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는 1사고마다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연구목적상 의도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걸린 질병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
5. 피공제자의 심실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공제회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공제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제1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공제회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4조(공제료) ① 공제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계약자, 피제공자 및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피공제자의 변경) ① 계약자가 피공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공제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 ② 공제기간중 피공제자가 증가, 감소 또는 교체된 경우에는 공제회와 계약자간에 따로 약정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 공제료는 일단위로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18조(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9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장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20조(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공제회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4. 연구주체의 장의 사고경위서
 5. 기타 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21조(급여의 지급) ① 공제회는 제20조(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 ② 공제회가 급여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 급여 청구절차를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공제회가 추정하는 급여의 50%상당액을 가지급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공제회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회가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급여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일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16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공제회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공제회는 급여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급여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급여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3조(소멸시효) 급여 청구권, 공제로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공제회에 설치된 재난복구비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6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공제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35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호와 3호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2006년 12월 29일

개정 2007년 6월 13일

개정 2008년 8월 1일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1조(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호에 의거 연구실험실(실험실습실 포함)을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별표 1에 따라 최저한도로 하여 보상한다. 단, 발생한 의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제2조(후유장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호에 의거 연구실험실(실험실습실 포함)을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1인당 보상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보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해등급별 보상금액

상 해 급 별	보 상 금 액	상 해 부 위
1급	450만원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성골절 9. 3도 화상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이상인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 해 급 별	보 상 금 액	상 해 부 위
2급	400만원	1. 상박골간부분쇄성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탈구 9. 그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350만원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300만원	1. 대퇴골과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 해 급 별	보 상 금 액	상 해 부 위
5급	250만원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파열 4. 족중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 수장부근건파열창 11. 아킬레스건파열 12. 2도 화상등이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이상인 상해 13.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200만원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 중족골골절 5. 치골 · 좌골 · 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중수골골절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150만원	1. 소아의 상지장관 골간부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절상과 부골극골절 4. 고관절탈구



상 해 급 별	보 상 금 액	상 해 부 위
7급	150만원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이상인 상해 9.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30만원	1.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 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1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거골, 중골을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 늑골골절 11. 척추체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완관절탈구 13.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 해 급 별	보 상 금 액	상 해 부 위
10급	100만원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 · 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다) 6.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60만원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4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2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1만원	1. 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태 2. 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 고

-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손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등급보다 한급 낮게 보상하고, 상해부위의 부상정도가 경미하여 실제의료비가 상해등급별 최저 보상금액의 90% 미만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별표 2〉 후유장애등급별 보상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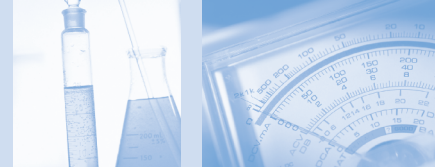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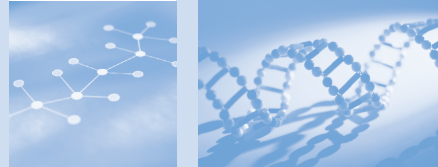
등 급	보 상 금 액	신 체 장 해
1급	10,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7,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급	보 상 금 액	신 체 장 해
5급	6,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4,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등 급	보 상 금 액	신 체 장 해
7급	4,000만원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3,0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2,25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 급	보 상 금 액	신 체 장 해
9급	2,250만원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875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1,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등 급	보 상 금 액	신 체 장 해
11급	1,500만원	8.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250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1,0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펴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등 급	보 상 금 액	신 체 장 해
14급	625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밑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연구활동 급수표



구분	전 공 대계열	전공소계열	1급	2급	3급
전 문 대 학	공 학 계 열	건 설	○		
		건 축	○		
		건축·설비	○		
		광학에너지	○		
		금 속	○		
		기 계	○		
		기전공학	○		
		반도체·세라믹	○		
		산업공학	○		
		섬 유	○		
		신 소 재	○		
		응용공학	○		
		응용소프트웨어	○		
		자 동 차	○		
		재 료	○		
		전 기	○		
		전산·컴퓨터	○		
		전 자	○		
		정보·통신	○		
		제 어 계 측	○		
		조 경	○		
		지상교통	○		
		토 목	○		
		항 공	○		
		해 양	○		
		화학공학			○
	교육계열	사회·자연교육	○		
	의 약 계 열	간 호	○		
		보 건	○		
		의 료 장 비	○		
		재 활	○		
	자 연 계 열	가정관리	○		
		농 수 산	○		
		생 물	○		
		식품·조리	○		
	원 예	원 예	○		
		의류·의상	○		
		자 원	○		

구분	전 공 대계열	전공소계열	1급	2급	3급
전 문 대 학	자 연 계 열	지 적	○		
		환 경	○		
		예체능	○		
		공 예	○		
		미 술	○		
		산업디자인	○		
	기 술 대 학	산업공학	○		
		전자공학	○		
	산 업 대 학	건축·설비공학	○		
		건축 학	○		
		광학공학	○		
		교양공학	○		
기 술 대 학	공 학 계 열	산업공학	○		
		전자공학	○		
		건축·설비공학	○		
		건축 학	○		
		광학공학	○		
		교양공학	○		
	산 업 대 학	기계공학	○		
		기전공학	○		
		도시공학	○		
		산업공학	○		
		섬유공학	○		
		신소재공학	○		
기 술 대 학	공 학 계 열	에너지공학	○		
		응용공학	○		
		응용소프트웨어공학	○		
		자동차공학	○		
		재료공학	○		
		전기공학	○		
	산 업 대 학	전산·컴퓨터공학	○		
		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		
		제어계측공학	○		
		조 경 학	○		
		지상교통공학	○		
기 술 대 학	공 학 계 열	토 목 공학	○		
		항 공 학	○		
		화 학 공학			○
	교육계열	자연계교육	○		
		간 호 학	○		
		보 건 학	○		
기 술 대 학	의 약 계 열	간 호 학	○		
		보 건 학	○		
		의 료 장 비	○		
		재 활	○		
	자 연 계 열	가정관리	○		
		농 수 산	○		
	원 예	원 예	○		
		의류·의상	○		
		자 원	○		

구분	전 공 대계열	전공소계열	1급	2급	3급
산 업 대 학	의 약 계 열	의료공학	○		
		재 활 학	○		
		치 의 학	○		
	자 연 계 열	가정관리학	○		
		교양생활과학	○		
		교양자연과학	○		
산 업 대 학	공 학 계 열	농 업 학	○		
		산림·원예학	○		
		생명과학	○		
		생물학	○		
		식품영양학	○		
		의류·의상학	○		
산 업 대 학	자 연 계 열	자 원 학	○		
		지구·지리학	○		
		화 학			○
		환 경 학	○		
	예체능 계 열	공 예	○		
		디자인일반	○		
		산업디자인	○		
		시각디자인	○		
		조 형	○		
		패션디자인	○		
산 업 대 학	공 학 계 열	건축·설비공학	○		
		건축 학	○		
		광학공학	○		
		교양공학	○		
		금속공학	○		
		기계공학	○		
산 업 대 학	자 연 계 열	기전공학	○		
		도시공학	○		
		반도체·세라믹공학	○		
		산업공학	○		
		섬유공학	○		
		신소재공학	○		
산 업 대 학	의 약 계 열	간 호 학	○		
		보 건 학	○		
		의 료 장 비	○		
		재 활	○		
	자연계열	가정관리학	○		
		교양생활과학	○		
		교양자연과학	○		
		농 업 학	○		
		동물·수의학	○		
		물리·과학	○		

구분	전 공 대계열	전공소계열	1급	2급	3급
대 학	공 학 계 열	에너지공학		○	
		응 용 공 학		○	
		응용소프트웨어공학		○	
		자동차공학		○	
		재 료 공 학		○	
		전 기 공 학		○	
		전산학·컴퓨터공학	○		
		전 자 공 학		○	
		정보·통신공학	○		
		제어계측공학		○	
		조 경 학		○	
		지상교통공학		○	
		토 목 공 학		○	
		항 공 학		○	
	해 양 공 학		○		
	화 학 공 학			○	
	교 육 계 열	공 학 교 육	○		
		자연계교육	○		
		초등교육학	○		
	의 약 계 열	간 호 학	○		
		보 건 학	○		
		약 학		○	
		의료공학		○	
		의 학	○		
		재 활 학	○		
		치 의 학	○		
		한 의 학	○		
		자 연 계 열	가정관리학	○	
	교양생활과학		○		
	교양자연과학		○		
농 업 학			○		
동물·수의학			○		
물리·과학			○		
산림·원예학			○		
생 명 과 학			○		
생 물 학			○		
수 산 학			○		
식품영양학			○		

제5장 보상절차 및 서류

보상내용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절차

